



국내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현황과 실태

이상우 수석연구원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지 1년 만에 1만 5천 명 이상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대상자가 3만 6,224명으로 나타남.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 더 많고, 60세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이행한 대상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1.5배 많음. 환자 질환과 중단의 결정은 각각 암과 호흡기질환, 환자가족이 대부분을 차지함. 향후 연명의료 중단을 본인이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서면작성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 2018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 시행되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경과하고 있음

-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 등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을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결정하는 제도임¹⁾
 - 다만, 법률²⁾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이행하여 말기환자가 임종하더라도 공적·민영보험에서 보험금 및 연금 수령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음

■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거나 환자가족의 합의에 의해 가능하고, 반드시 담당의사 등의 확인이 요구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 건강할 때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서류로서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며,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함³⁾

1) 법률 제2조 제4항 및 제5항, 제19조 관련

2) 법률 제3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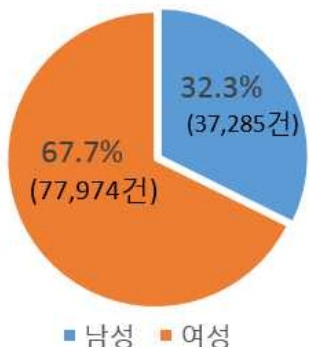
3) 법률 제2조 제9항 관련

- 동 서류 작성 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1~4가지 항목을 체크할 경우 미래의 말기환자의 임종과정에서 체크한 항목의 치료를 중단할 수 있음(연명의료계획서도 동일)
-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담당의사 등이 말기환자⁴⁾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⁵⁾로 진단·판단 받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서류임
- 이 외에도 환자본인의 의사능력 상태에 따라 환자가족 2인 이상 일치하는 진술⁶⁾ 또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⁷⁾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음

■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1년간 시범기간⁸⁾보다 많은 11만 5천 명 이상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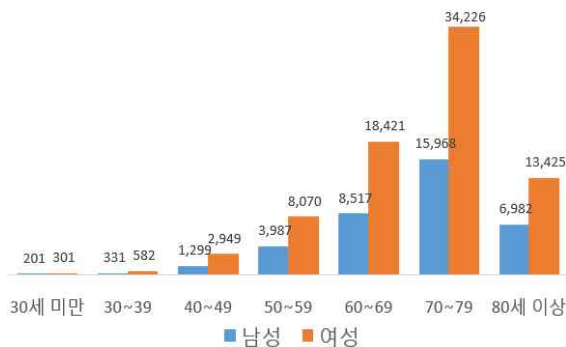
- 성별로는 여성이 77,974건(67.7% 비중)으로 남성 32,285건(32.3%)보다 약 2배 이상 많이 작성함
-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97,539건으로 전체에서 84.6%를 차지하고, 특히, 이 중에서 70대 여성(34,226건)과 60대 여성(18,421건)이 가장 많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2018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2. 14)

〈그림 2〉 2018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령대별 작성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2. 14)

■ 도입 1년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한 경우는 3만 6,224명으로 집계됨

- 환자 성별로는 남성이 21,757건으로 여성 14,467건 보다 약 1.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80대 이상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많은데 이는 80대 이상 여성의 인구가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 주요 요인임

4)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 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진단한 사람(법률 제2조 제2항)
 5)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판단한 사람(법률 제2조 제3항 관련)
 6)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으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때,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과 의사 2인의 확인이 요구됨
 7)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도 없을 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이 요구됨
 8) 2017. 10. 16~2018. 1. 15 월간 3,112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 1. 24)

- 환자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28,519건으로 전체에서 78.7%를 차지하고, 이 중에서 70대 남성(6,933건)과 60대 여성(5,162건)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함

〈표 1〉 2018년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대상자 현황

구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계
남성	248	258	969	3,096	5,162	6,933	5,091	16,666
여성	216	286	860	1,772	2,381	3,747	5,205	14,467
전체	계	464	544	1829	4,868	7,543	10,680	25,928
	비중	1.3%	1.5%	5.1%	13.4%	20.8%	29.5%	28.4%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2. 14)

- **임종과정의 질환은 암 비중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 방법은 환자가족 전원 합의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임종과정 환자의 질환은 암(59.1%), 호흡기질환(15.3%), 심장질환(5.8%), 뇌질환(5.4%), 패혈증(3.2%), 신장질환과 간질환 각각 2.4%의 순임
 -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방법의 비중은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이행 35.9%,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한 이행 31.8%,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 31.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0.8%의 순임
- 현재까지는 연명의료 중단이 가족을 중심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향후 연명의료 중단을 본인이 건강한 상태에서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서면작성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kiri**